

국제사회의 인권개입과 북한의 대응전략

김 일 기*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국제사회의 인권개입에 대한 북한의 대응 |
| II. 유엔의 북한인권 개입 | V. 맺음말 |
| III. 개별국가의 북한인권 개입 | |

〔 논문 요약 〕

본 논문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입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북한인권 개입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입은 유엔, 미국·유럽연합·일본 등 개별국가, 그리고 국제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북한인권결의안,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입에 대해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면서 체제안보의 관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 소극적으로 협력하거나 내부적으로 법률을 재정비하는 등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당국 스스로 개선노력을 보이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진전되기는 어렵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입이 그동안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북한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북한인권 개입은 북한당국이 인권개입을 수용하는 것이 북한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변화가 수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 스스로의 인권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어렵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인권개입 역시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국제사회, 북한인권, 인권개입, 유엔인권기구, 북한의 인권관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I. 머리말

북한은 비인간적 감시와 처벌을 통해 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존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인권상황을 가지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국제사회와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실태를 분석하고 있는 보고서들은 오히려 심각한 인권침해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지속된 경제난과 식량난 악화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과 탈북자가 증가하면서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극심한 자연재해로 '고난의 행군' 기간의 정점에 있었던 1995년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은 북한의 유엔대표부로 하여금 유엔인도지원국에 대북긴급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했다. 북한의 긴급지원 요청 이후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되었으며, 북한인권이 국제사회의 주요 화두로 등장하였다.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 사안으로 등장하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개별국가, 그리고 국제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요구들이 전개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는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으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으며, 유럽연합은 북한과 인권 대화 및 기술협력을 갖고 있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적 비정부기구(INGO: International Non-Government Organization)들도 북한인권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인권개입에 대해 체제안보의 관점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국제사회에 소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미약하나마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입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는 대한 연구는 향후 효과적인 북한인권 개입을 위해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입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사회의 개입주체는 북한 당국이 대응이 집중되고 있는 유엔과 개별국가로 한정하였으며, 북한의 대응전략은 북한의 인권인식과 행위주체별 대응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북한당국의 인식과 정책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있는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인권개입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유엔의 북한인권 개입

유엔의 인권기구는 크게 유엔현장에 기반한 '현장기구'와 인권규약에 기반한 '규약기구'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장기구는 유엔안보리, 총회, 인권이사회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기구들은 소속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치적 성격이 높다. 반면 규약기구는 각국 대표가 아니라 해당 인권분야의 국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특정 분야의 인권상황을 심의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비정치성 성격을 지니고 있다.

유엔의 북한인권 개입은 현장기구인 총회, 인권이사회(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과 규약기구인 규약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의 주도로 2003년 처음 상정되었으며, 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로 전환되기 직전인 2003~2005년까지 3년 연속으로 채택되었다.²⁾ 유엔인권이사회 역시 2008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다.

유엔총회 역시 2005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다.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2004년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북한이 긍정적인 인권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총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도록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표 1〉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결과

구분	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				유엔총회						
	2003 59차	2004 60차	2005 61차	2008 7차	2009 10차	2010 13차	2011 16차	2005 60차	2006 61차	2007 62차	2008 63차	2009 64차	2010 65차	2011 66차
표결 결과	28:10:14 (찬성:14)	29:8:16	30:9:14	22:7:18	26:6:15	28:5:13	30:3:11	88:21:60	99:21:56	101:22:59	94:22:63	99:20:63	106:21:55	123:16:51
한국 입장	불참	기권	기권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기권	찬성	기권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찬성 공동제안

출처: 『2010 통일백서』(서울: 통일부, 2010), p. 126 수정보완.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는 연례적인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북한에 대한 압박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찬성표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총회와 인권이사회가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되어 정치적 성격을 띠는 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회원국들의 증가는 북한당국에 대한 정치적·외교적 압력을 배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³⁾

2) 유엔의 인권개선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인권기구 설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6년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유엔총회 산하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로 전환되었다.

3) 김수암, "국제사회의 인권개입과 북한의 인권정책결정 요소 분석," 『국제문제연구』, 제11권 3호(2011), p. 157.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결의안 이외에도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⁴⁾ 제도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권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보편적 정례검토는 모든 유엔회원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인권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6년 3월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유엔회원국들이 4년마다 주기적으로 자국의 인권문제 및 전반적 인권의무 이행상황에 관해 다른 모든 회원국들로부터 질의·평가·개선권고·협력제안 등을 받는 제도이다.

북한은 보편적 정례검토 제도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09년 12월 제6차 정례 인권검토회의에서 캄보디아, 콩고민주공화국, 노르웨이 등 16개국과 함께 인권이사회에서 심의를 받았다. 북한관련 검토회의는 북한대표와 유엔 회원국들간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회원국들은 북한 대표단을 상대로 질의 및 권고를 직접 제시하였다. 북한당국은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제기된 167개의 권고안 중 50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117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2010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수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채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들이 반발하였지만 표결 절차 없이, 2010년 3월 18일 인권이사회 13차 회기에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에 따른 공식 보고서가 채택되었다.⁵⁾

유엔인권위원회는 국가별 및 주제별 인권사안에 대한 조사를 담당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을 임명해 왔다.⁶⁾ 국가별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위원회에 국가별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보고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제별 특별보고관은 여성폭력문제, 표현의 자유, 고문실태 등 분야별 인권 침해의 주요한 현상을 조사·모니터·조언하고 공개적으로 보고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특별보고관들은 개인자격으로 1년간 활동하고 있으며 임기는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현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별 특별보고관과 주제별 특별관들이 모두 개입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2004년 4월 제60차 회의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⁷⁾ 제도를 도입하고 비딧 문타폰(Vitit Muntarbhorn)을 임명하였다. 문타폰 보고관은 2004~2010년까지 6년

4) 보편적 정례검토에 대해서는 이금순·김수암,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서울: 통일연구원, 2008), pp. 12-21 참조.

5) 국가인권위원회, 『2009년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우리정부, NGO, INGO 관련 자료집』, 2010.

6) 유엔은 1979년 국가별 및 주제별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는 특별메커니즘을 설치했고, 유엔인권위원회는 특정한 인권문제의 연구를 위해 전문가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혹은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 등으로 불리지만, 1946년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책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에 의해 법적으로 “활동중인 전문가”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역), 『유엔인권해설집-유엔 특별보고관 17가지 관련 FAQ』(2004), pp. 9-10.

7) 유엔인권위원회는 8개 국가별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였으며, 이들 국가들은 부룬디, 캄보디아, 북한, 아이티, 미얀마, 팔레스타인, 소말리아, 수단 등이다.

동안 활동하였으며, 임기만료에 따라 2010년 6월 제1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의 마루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만이 새로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상황과 국제인권법하의 의무를 북한당국이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를 매년 유엔인권이사회와 총회에 제출하고 있다.⁸⁾

주제별 특별보고관들은 국가방문 활동을 활용하여 북한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종교·신념의 자유권에 대한 특별보고관(2002), 견해·표현의 자유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한 특별보고관(1999), 식량권특별보고관(2003·2009) 등이 북한방문을 시도하였으나 북한당국의 거부로 조사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들 주제별 특별보고관들은 개별적으로 혹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공동으로 서신을 통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당국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려고 시도하여 오고 있다.⁹⁾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주제별 특별보고관들은 비록 북한을 방문하지는 못하였지만 한국, 일본, 몽고 등 주변국가들의 방문을 통해 북한인권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유엔의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제출하고 있다. 현재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상정의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유엔의 특별보고관 활동은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 개선노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¹⁰⁾ 특별보고관은 유엔이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유엔차원에서 북한 인권상황 보고절차를 수행하는 유일한 제도이다. 나아가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북한인권 보호 및 증진을 결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관련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인권협약 체계를 확립하여 오고 있다. 그 중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이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2개의 기본적인 규약 이외에도 주제별 국제인권협약이 제정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조약의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조약의 실행을 관장하는 규약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¹¹⁾

규약위원회는 당사국이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면 당사국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인권조약의 이행 상황을 심의·논평(comments)한 후, 이를 바탕으로 권고사항 등을 담은 최

8)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근식,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 보고서 분석,” 『북한인권 관련 국가, 국제기구 및 INGO의 동향 분석』(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7) 참조.
9) 특별절차에 대해서는 UNOHCHR 홈페이지와 이금순·김수암,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pp.21~28; 김수암, “국제사회의 인권개입과 북한의 인권정책결정 요소 분석,” pp. 160-161 참조.
10)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r. Vitit Muntarbhorn (A/HRC/13/47) (February 17, 2010), p. 5.
11) 규약위원회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이주노동자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 강제실종위원회이다.

중검토의견서(Concluding Observations)을 채택함으로써 특정국가의 인권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개입절차에서 보듯이 당사국이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해당 규약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개입할 수 있다.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등 헌장기구가 주체적으로 특정국가의 인권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면, 규약위원회는 당사국의 협력에 따라 수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현재 국제인권협약 중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아동권리규약, 여성차별철폐규약 등 4대 조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규약위원회에 대해서 국가보고서 제출, 심의 참여, 최종견해 수용 등의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오고 있다.

〈표 2〉 북한의 4대인권조약 가입 및 보고서 제출 현황

인권기구	가입일자	보고서제출주기	국가보고서		
			차수	제출예정일	제출일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81.9.14(비준)	4년	최초	1982.12.13	1984.4.2
			2차	1987.10.3	2000.3.20
			3차	2004.1.1	미제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81.9.14(비준)	5년	최초	1983.9.1 1987.9.1	1984.12.18 1989.1.14
			2차	1992.6.30	2002.4.12
			3차	2008.6.30	미제출
아동권리협약	1980.8.23(서명) 1990.9.21(비준)	5년	최초	1992.10.20	1996.2.13
			2차	1997.10.20	2002.5.16
			3·4차	2007.10.20	2007.12.10
			5차	2012.10.20	미제출
여성차별철폐협약	2001.2.27(비준)	4년	최초	2002.3.27	2002.9.11
			2차	2006.3.27	미제출

출처: 김수암, “국제사회의 인권개입과 북한의 인권정책결정 요소 분석,” 『국제문제연구』, 제11권 3호 (2011), p. 165.

유엔의 규약위원회들은 북한의 보고서 제출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요구사항들을 북한 당국에게 제시하여 왔으며, 심의과정에서 북한의 입장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규약위원회의 북한의 국가보고서 심의는 전반적인 인권실태에 대한 비난보다는 구체적인 특정사안에 대한 지적과 함께 북한의 이에 대한 입장설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규약위원회가 국가를 대표하는 정치적 성격의 기관이 아니라 전문가로 구성되는 비정치적 성격의 기구이기 때문이다.

Ⅲ. 개별국가의 북한인권 개입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입을 주도하는 개별 국가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은 인권과 민주주의 확산을 주요한 외교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인권유린국가들에 대해 인권개입을 시도해 왔다.¹²⁾ 특히 9.11 사태 이후 미국은 테러국가의 하나인 북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인권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미국의 북한인권 개입은 크게 행정부 차원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과 의회차원의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연례각국인권보고서(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¹³⁾, 연례인신매매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¹⁴⁾의 국제종교자유보고서(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를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¹⁵⁾ 미국은 이러한 보고서들을 통해 북한 인권침해의 심각함을 지적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동시에 외교적 압력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03년부터 상하원 청문회를 통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미국 국내 여론을 환기시키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자 노력해왔다. 미국 의회는 이라크, 이란,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인권문제에 대한 개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여 오고 있으며,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상하원 합동으로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은 북한인권특사의 임명, 탈북자의 보호 및 미국 정착 허용,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이다.¹⁶⁾ 미국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에 통과됨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제이 레프코워츠를 북한인권특사로 임명하였다.

미국 의회는 북한인권법이 2008년에 기한이 만료되면서 2012년까지 북한인권법의 효력을 연장하는 ‘2008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H. R. 5834 : 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08)’을 통과시켰다. 대부분의 내용은 2004년 북한인권법과 동일하나 북한인권특사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격상되었으며,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정규직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
- 12) 이수훈 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로드맵 구축-제도적 기반 확립 및 Action Plan 수립을 중심으로』(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0), p. 112.
 - 13) 미국은 1977년 카터 행정부에서부터 미국의 대외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인권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 ‘각국 인권보고서’(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를 매년 발행하고 있으며, 해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과 대외무역법(the Trade Act of 1974)에 따라 이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인권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해당국가에 대한 정책 수립, 외교와 원조, 훈련과 다른 자원의 할당 등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14)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미 정부기구로 2000년 이후 해마다 미 국무부를 통해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 15) 연례각국인권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지극히 열악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국제종교자유보고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특별관심대상국(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연례인신매매보고서는 최하위인 3등급(Tiers 3)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수암, “국제사회의 인권제기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북한인권 관련 국가, 국제기구 및 INGO의 동향 분석』(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7), p. 168.
 - 16) 북한인권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김수암,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4) 참조.

미국은 행정부와 의회의 북한인권 개입 이외에도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양자, 다자 포럼에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며, 특히 6자회담, 유엔인권기구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한·미·일 정책조정그룹 회의(TCOG)에서 한국, 일본과 북한인권 문제를 조율하여 왔다. 미국은 유엔인권위원회 및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을 공동 제안하였으며,¹⁷⁾ 결의안 통과를 위해 다른 관심국가들과 협력하는 등 북한인권문제의 공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적 보편적 가치로 인권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권의 보편성(universality)과 불가분성(indivisibility) 원칙에 근거하고 인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¹⁸⁾ 이러한 인식은 인권 보호가 유럽연합 내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원칙으로서 유럽연합의 대외정책에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인권문제를 주요 요소로 설정하였다. 유럽연합은 2000년 11월 20일 대북한 행동지침(EU Lines of Action Towards North Korea)을 마련하였는데 북한과의 수교협상에서 인권문제를 주요 의제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⁹⁾

2001년 5월에 EU는 북한과의 수교를 통해 대화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개입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1년 6월 13일 유럽연합 본부에서 북한 대표단과 유럽연합 간에 처음으로 인권대화가 개최 되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과 북한 사이에 인권분야 기술협력이 이루어졌다. 유럽연합은 1998~2004년까지 총 7회에 걸쳐 북한과의 양자간 정치·인권대화를 진행하였다. 유럽연합은 북한과의 정치·인권대화를 통해 한반도 안보문제 등 유럽연합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를 모색하였고, 특히 북한을 인권대화의 장으로 유도하여 인권개선을 유도하고자 노력하였다.²⁰⁾ 그러나 양자간 정치·인권대화 속에서 유럽연합은 북한의 인권과 기본권 훼손, 법의 지배 부재,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유엔기구와 NGO등의 접근 곤란 등을 지적하였으나, 북한당국은 인권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견지하였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북한의 대응에 실망하면서, 의회차원에서 대북인권결의안²¹⁾을 채택하고 유엔 등 다자간 인권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17) 미국은 2005년 11월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공동 제안하였고, 본 결의안은 12월 유엔 총회에서 최초로 통과되었다. U.S. Dept. of State, Support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The U.S. Record 2005-2006 (2006. 4. 5) www.state.gov/g/drl/rls/shrd/2005/63945.htm

18) 유럽연합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기본권, 자유의 존중, 법치에 기초하는 일종의 '가치공동체'로서, 인권이 회원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자체의 법·제도의 토대가 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선필, "유럽연합의 대북한 정책에서 인권정책의 의미와 역할," 『국제지역연구』 제13권 2호(2009), p. 264.

19) 최의철 외, 『북한인권 관련 대응방안 모색』(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87-88.

20) Philippe Pons, 'Corée du Nord, enjeu négligé de l'Europe, par Philippe Pons,' Le Monde(2008. 10. 31)

21) 2010년 7월 유럽의회는 찬성 64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유럽의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 2006년 6월 이후 약 4년만이다. <<http://www.eurasiareview.com/201007094679/eu-human-rights-resolution-on-zimbabwenezuela-north-korea.html>>

왔다. 유럽연합은 북한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북한당국이 점진적이고 가시적인 개선 조치를 취할 때까지 양자 간 정치·인권대화과 유엔 등 다자간 포럼을 통해서 대북 인권압력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²²⁾

유럽연합은 2003년에 접어들면서 북한 인권개입 정책을 양자간 대화에서 다자간 대화로 전환하게 된다. 유럽연합은 대북 인권정책의 변경을 통해 2003~2004년에 다자간 기구인 유엔인권위원회에 북한 인권결의안을 제출하고 채택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럽연합의 북한인권 개입 정책이 양자간 대화에서 다자간 대화로 변화하면서, 유럽연합과 북한과의 양자간 정치·인권대화가 2005년에 중단되었다가, 2009년부터 다시 재개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한 인권 개선의 조건들을 보다 구체화하면서도, 미국과는 달리 지속적인 원조 및 양자대화 자체에도 중요성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이 인권 가치를 중요시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의 인권 개선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인권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북한 인권 개입은 전반적인 북한 인권 개선보다는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에 대한 인권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일본의 납치자 중심의 북한인권 정책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다. 2002년 9월 17일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에 대한 김정일의 시인에 일본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시인을 계기로 북한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정권의 인권침해문제를 강도 높게 비난하였으며, 일본사회 내 대북 강경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고조시켜 왔다. 2004년 5월22일 제2차 북일 정상회담에서는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과 일본인 납치피해자가족 5명의 일본귀환과 북한에서 사망으로 발표한 10여명의 진상 재조사에 대해 합의하였다. 일본은 이 과정에서 북한에 식량 25만 톤과 천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 등을 지급하고, 북일 수교 교섭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상회담 과정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는 일본 정부가 북한에 과도한 대가를 지불하였으며, 납치자, 핵, 미사일 등 여타 동아시아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건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²³⁾

일본의 북한인권 개입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영향을 받아 제정한 법률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6월 '납치문제 기타 북조선에 의한 인권침해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납치자의 국가채무, 지방공공단체의 채무, 북한인권 침해 문제 계발주간 설정, 연차보고, 국제사회의 연대 및 일본 내 홍보활동 및 탈북자 보호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 등이다. 또한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북경제조치(특정선박의 입항금지, 외국환 및 외국무역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명기하였으며, 납치사건을 '국가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일(12.16)을 '북한의

22) 최의철, 『EU의 대북인권정책』(서울: 통일연구원, 2005).

23) 이수훈 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로드맵 구축-제도적 기반 확립 및 Action Plan 수립을 중심으로』, p. 125.

인권침해를 생각하는 날'로 지정하기도 했다.²⁴⁾ 현재 일본의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보적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법률의 명칭에서 보듯이 일본인 납치자 중심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북한인권 개입은 인권보고서, 북한인권법, 인권대화와 기술협력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인권상황을 기술하고 인권실태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당국에 대해 인권상황을 개선하라는 외교적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함께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통해 북한당국의 인권개선을 위한 압박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 일본과는 달리 대화와 협력을 통한 인권개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인권개입 방식은 정권붕괴나 체제변혁을 추구하기보다는 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²⁵⁾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북한과의 상호작용과 협력적 방식을 통해 북한 당국의 인식과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IV. 국제사회의 인권개입에 대한 북한의 대응

1. 북한의 인권인식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입을 인권공세로 규정하면서 체제안보의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은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지배를 위한 외교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²⁶⁾ 국제사회의 인권개입을 체제위협으로 간주하는 북한의 인식은 자유 및 인권의 확산과 대규모 탈출이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국가 붕괴의 주된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북한은 우리식 인권, 주권 및 내정불간섭, 국권으로서의 인권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입을 부당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문화상대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²⁷⁾ 북한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각이한 전통과 민족성,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발전력사를 가지고 있으며 매개 나라의 인권기준과 보장형태도 해당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따라 서로 다르다"²⁸⁾

24) 윤덕민·김근식,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합리적 접근: 사회통합적 시각』(서울: 사회통합위원회, 2011), p. 50.

25) <http://www.delkor.cec.eu.int/en/eurorea/humanrights.htm>

26) "제국주의의 〈인권〉 공세를 단호히 짓부시자," 『로동신문』 2007년 8월 17일.

27) 북한의 인권인식에 대해서는 최의철, 『인권과 국제정치 그리고 북한인권』(서울: 백산, 2001); 김근식, "북한의 인권: 안으로부터의 시각,"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서울: 사람생각, 2002); 서보혁, 『북한인권』(서울: 한울, 2007) 참조.

28) 『로동신문, 2001년 3월 2일.

고 주장하면서,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인권기준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일성도 인권이 보편적 가치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인권기준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권기준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식의 올바른 인권기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⁹⁾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입에 대해 인권기준을 ‘우리식’과 ‘서방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우리식 인권’은 1990년대 초반의 사회주의 붕괴라는 체제위기 상황속에서 나타난 ‘우리식 사회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심각한 경제난의 위기상황을 ‘우리식 사회주의’를 통해 탈피하고자 하였으며,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제국주의 세력들의 인권공세로 비판하면서 ‘우리식 인권’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인권개입에 대해 북한은 주권 및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인권보다는 주권을 우선시 해왔으며, 인권문제는 국가주권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간섭은 주권 및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의 보편성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선 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인권보호라는 명분 아래 약소국가들을 복속시키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인권의 보편성을 명분으로 하는 공세에도 불구하고 주권은 모든 국가와 민족의 생명선으로 주권이 없는 인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⁰⁾ 따라서 인권문제는 국가주권 내의 문제로 이에 대한 간섭은 주권의 원칙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일은 “인권의 첫째가는 원수는 인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며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제국주의자들이다”³¹⁾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주권 및 내정불간섭의 대상으로 인권인식은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북한의 인권 인식은 선군시대에 들어서면서 국가주권과 결합되어 ‘국권론’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북한은 국가는 제도적·법률적 보장이 있어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데, 자주권을 상실당하면 인권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권은 곧 국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³²⁾ 이러한 인권인식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를 체제붕괴, 정권교체 전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권수호와 인권보장을 동일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북한은 국권론을 선군정치와 연결시켜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인권을

29) 김일성은 1994년 미국 〈워싱턴 타임즈〉 기자단과의 만남에서 “인민이 좋아하면 그것이 공정한 인권기준”이라고 하면서, 인권의 절대적 기준으로 ‘인민이 좋아하고 그들이 요구와 리익에 부합되는 것’을 제시하였다. 『김일성저작집 4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371.

30) Statement by The Deleg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Fofy-Sixth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29 March, 2000.

31)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선집 1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477.

32) 조택범, “제국주의의 반동적 <인권>공세를 짓부셔버려야 한다,” 『로동신문』, 2009/10/28.

향유하기 위해서는 국권을 수호할 수 있는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은 강력한 국력, 즉 군사력을 전제로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군은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정치로서 국제사회의 '인권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정치방식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며, 선군은 인권옹호의 선결이며 믿음직한 담보, 선군정치는 곧 인권옹호정치라고 주장하고 있다.³³⁾ 이와 같은 북한의 인권정책은 기본적으로 체제안보 관점과 직결된 인권인식으로 인해 인권 해결의 관점이 아닌 인권공세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있다.

2. 북한의 대응전략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입에 대한 북한의 대응전략은 체제안보의 관점과 현실적 필요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그 비중에 따라 내용과 조정의 폭이 결정되고 있다.³⁴⁾ 북한은 국제사회의 고립속에서 체제생존을 모색하는 가운데 경제희생과 국제적 고립 탈피라는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대응전략을 달리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인권개입의 주체와 개입방식에 따라 차별적인 대응전략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와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서는 북한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불순한 정치적 동기라고 규정하고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가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는 정치적 기구, 일방적인 압박이라는 개입방식, 북한정권 전복이라는 불순한 개입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여 강한 반발과 거부라는 대응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응전략은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1997년 인권문제 제기에 대하여 인권규약 탈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다. 2008년 11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도 북한은 체제와 사상을 강제로 바꾸고자 하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³⁵⁾, 결의안 자체를 부정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해오고 있다. 북한은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는 인권결의안에 대해 “적대세력들의 정치적 모략 책동의 산물”이며, 이는 ‘인권의 정치화’라고 규정하면서 ‘전면 배격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³⁶⁾

북한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입장에 따라 인권결의안에 의해 임명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명남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북한은 제60차 유엔인권위 결의안과 특별보고관을 수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몬타폰 특별보고관의 발표는 북한 체제전복을 노리고 심리전을 전개하는 것이며 유엔인권위원회가 미국에 의해 좌우되는 바 그 존재가치가 의문시된다고 하였다. 또한 개별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유엔인권위원회의 인권결의나 특별보고관 제도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주

33) “반역사적인 지배주의 외교정책-미국 인권공세,” 『로동신문』, 2007/9/13.

34) 김수암, “국제사회의 인권제기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p. 343.

35)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박석훈 차석대사 표결 전 발언, 『한겨레신문』, 2008/11/24.

36) 『조선중앙통신』, 2010/11/20.

권 유린이며 적대행위의 산물이라고 주장하였다.³⁷⁾

북한은 유엔에서의 북한인권 문제 논의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인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유엔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유엔인권위원회는 서방국가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선택성과 이중기준을 활용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비판하였다.³⁸⁾ 이러한 입장에 따라 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과 북한인권특별보관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유엔의 인권개입에 대해 거부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당국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전향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4개 국제인권협약의 당사자로서 1984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보고서를 제출한 이래 최근까지 4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위원회에 규약위원회에 규약의 이행결과를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규약위원회가 북한 스스로 가입하였으며, 전문가로 구성되어 정치적 성격을 띠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규약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인권보장을 홍보하는 선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국제사회의 인권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유엔총회 및 인권이사회의 인권결의안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지만, 보편적 정례검토제도와 같이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적용되어 선별적으로 운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입 자체는 수용하여 협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제도가 운용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 협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보편적 정례검토는 국가들로 구성된 정치적 성격의 제도이지만 선택적 적용이 아니며 쌍방향적 협력관계를 통해 개입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³⁹⁾

북한은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특사 등을 통한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대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제패전략의 일환”, “침략과 간섭을 정당화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세계를 미국식 ‘자유세계’로 만들기 위하여 미국식 인권과 민주주의를 세계에 전파함으로써 미국식으로 세계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⁰⁾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의 하나로 인권문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이 민주주의 확산을 명분으로 북한의 체제전복, 제도변경을 목적으로 북한인권법을 채택하고 북한인권 담당특사까지 임명한 것이 구체적인 징표라고 주장하고 있다.⁴¹⁾ 북한은 미국의

37) 『연합뉴스』, 2006/6/29.

38) E/CN.4/2005/G/13, Letter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eoples's Republic of Korea, 2005/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평양방송』, 2005/4/20.

39) 김수암, “국제사회의 인권개입과 북한의 인권정책결정 요소 분석,” pp. 162-163.

40) “《세계화》 책동은 파산을 면할 수 없다,” 『로동신문』, 2007/1/28.

41) 『평양방송』, 2005/4/20; 신분진, “미국식 《민주주의확산》 책동의 반동적 본질,”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학), 52권 3호(2006), p. 60.

북한인권법에 대해 핵과 인권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틀로 규정하면서, 인권개입을 북한체제의 붕괴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⁴²⁾

북한은 미국의 인권개입에 대해 미국의 인권침해 상황을 거론하면서 맞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대응전략은 인권침해국으로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는 국가들이 사용하는 일반적 대응방법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미국의 인권보고서 발간에 대응하여 『미국의 인권기록』을 발간하는 것에 대해 협력하고 있으며, 러시아, 베트남, 브라질, 알제리 등 다른 국가들도 인권보고서를 통한 미국의 인권평가 행위의 부당성에 공감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⁴³⁾

북한은 유럽연합의 인권개입에 대해서는 미국·일본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유럽연합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의 압박을 약화시키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유럽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인권대화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유럽연합과의 인권대화를 수용한 것은 체제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수교라는 현실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상정을 주도하자 체제안보적 관점에서 인권대화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유럽연합과의 인권대화는 북한의 필요에 따라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북한인권 개입에 대해 북한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권유린을 규탄하고,⁴⁴⁾ 과거 식민지 시기의 강제연행, 납치사망자, 일본군 위안부 등의 만행을 제시하면서 역공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에서 대북제재 시행, '납치문제 및 기타 북조선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이 채택되는 등 반복여론이 확대되자 강경대응 전략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이 납치문제와 인권을 구실로 북한에 대한 '압력과 제재'를 법제화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추종하여 납치자 문제, 북한인권법 등을 명분으로 북한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음모를 획책하고 있으며, 일본의 대북제재 및 인권제기 움직임에 대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자위조치로 대응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납치자 문제 제기에 대해 종군위안부 등 인권유린국이라는 관점에서 대응해 오고 있다.⁴⁵⁾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입에 대해 체제전복 음모로 규정하고 강한 거부와 반발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체제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내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오고 있다. 북한은 1998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거주여행의 자유(제75조)를 신설했으며⁴⁶⁾, 북

42) 『조선중앙통신』, 2004/7/27.

43) 『민주조선』, 2011/4/21; 『조선중앙통신』, 2011/5/10; 『로동신문』, 2011/5/31.

44) “일본의 정당, 단체가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규탄.” 『민주조선』, 2006/3/19.

45) 『조선중앙통신』, 2005/2/8, 2005/2/10.

46) 1997년 유엔인권소위원회 결의안에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강하게 요구하였다.

한은 2009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인권존중 조문을 신설하였다(제8조).⁴⁷⁾ 그리고 인권침해 우려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북한 형법도 더디긴 하지만 조금씩 외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4년 이후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특히 2004년 형법 개정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유추해석 조항을 삭제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수용하는 조치를 명문화하였다. 2007년 형법 부칙을 제정하여 사형의 조항이 대폭 증가하여 인권적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개처형 등 사형의 조항을 더욱 엄밀하게 하려는 측면도 있다. 이외에도 북한은 장애자보호법(2003년), 행정처벌법(2004년), 연로자보호법(2007년), 여성권리보장법(2010년), 아동권리보장법(2010년), 보통교육법(2011년) 등을 제정하였다.

물론 북한의 국내법 개정이 실제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체제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담보하기 보다는 국제사회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V. 맺음말

국제사회의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북한인권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환기시켜 주고 있으며,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정당화시켜 주고 있다. 유엔과 개별국가의 북한인권 개입은 유엔기구의 성격과 개별국가의 입장에 따라 압박 또는 대화·협력 등 서로 다른 개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개입에 대해 체제안보의 차원에서 거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에서는 인권관련 법제의 개정, 유엔에서의 보고서 제출과 적극적 해명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하는 등 과거에 비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당국 스스로 개선노력을 보이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진전되기는 어렵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입이 그동안 다양하게 펼쳐졌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북한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입이 북한 체제를 문제 삼지 않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경우 대화 혹은 선택적인 협력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인권개입이 정치적 압력의 형태를 띠거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의 인권개입에는 강한 거부와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입은 즉각적·전면적 개선을 촉구하기 보다는 부분적·점진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의 인권개입을

47) 북한은 헌법 제8조에서 “국가는 ...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인권존중의 조항을 최초로 삽입.

수용하는 것이 북한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변화가 수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북한 역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엔과 국제사회의 점증하는 인권압력에 부정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기는 힘들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면적인 인권개선은 어렵겠지만 유엔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 선택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점진적인 인권개선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개입은 북한 주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을 통해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수용가능성을 전제로 할 때,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요구된다.

첫째, 북한이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국제인권협약의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 이미 북한은 4대 인권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규약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북한이 가입하지 않고 있는 고문방지, 인종차별철폐, 장애인, 강제실종 등 기타 인권협약에 대한 가입을 촉구함으로써, 국제인권협약에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둘째, 6자회담과 양자 및 다자대화를 통해 인권대화를 시도하여야 한다. 북한은 유럽연합과 인권대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국제기구 및 개별국가들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의 인권대화 협력이 북한인권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국가 및 국제기구들은 북한과의 인권대화 및 협력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북핵 6자회담의 재개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북핵 폐기과정이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 북한인권 문제가 6자회담에서도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입이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개별국가, 국제인권단체 등의 일치된 목소리와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인권네트워크의 구축은 북한에 대한 인권압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이제 단순히 북한만의 문제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화두가 되어가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은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보편적 인권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주민들 스스로 인권개선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결국 북한의 인권개선은 북한당국의 인식변화를 기초로 한 정책변화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스스로 인권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인권을 개선해 나가기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개입은 북한의 인권보호와 증진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역), 『유엔인권해설집-유엔특별보고관 17가지 관련 FAQ』, 2004.
- 국가인권위원회, 『2009년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우리 정부, NGO, INGO 관련 자료집』, 2010.
- , 『북한인권 관련 국가, 국제기구 및 INGO의 동향 분석』,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7.
- 김근식, “북한의 인권: 안으로부터의 시각,”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서울: 사람생각, 2002.
-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 보고서 분석,” 『북한인권 관련 국가, 국제기구 및 INGO의 동향 분석』,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7.
- 김남국, “유럽연합의 인권정책: 전쟁, 난민 그리고 정체성,” 『EU학 연구』, 제12권 2호(2007).
- 김병로,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김수암, “국제사회의 인권개입과 북한의 인권정책결정 요소 분석,” 『국제문제연구』, 제11권 3호(2011).
- , “국제사회의 인권제기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북한인권 관련 국가, 국제기구 및 INGO의 동향 분석』,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7.
- ,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배성인, “북한인권 문제와 국제사회: 압력과 대응 그리고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1호(2004).
- 서보혁, 『북한인권』, 서울: 한울, 2007.
- 신분진, “미국식 《민주주의확산》 책동의 반동적 본질,”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법학), 52권 3호(2006).
- 윤덕민·김근식,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합리적 접근: 사회통합적 시각』, 서울: 사회통합위원회, 2011.
- 이금순·김수암,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이선필, “유럽연합의 대북한 정책에서 인권정책의 의미와 역할,” 『국제지역연구』 제13권 2호(2009).
- 이수훈 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로드맵 구축-제도적 기반 확립 및 Action Plan 수립을 중심으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0.
- 이원웅, “국제사회 인권압력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국제정치논총』, 제47집 1호(2007).
- 이유진, “북한과 국제사회의 상호존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북한인권개선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50집 1호(2010).
- 최의철 외, 『북한인권 관련 대응방안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최의철, 『EU의 대북인권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 『인권과 국제정치 그리고 북한인권』, 서울: 백산, 2001.
- 통일부, 『2010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0.
- 『로동신문』, 『민주조선』,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동북아연구〉

E/CN.4/2005/G/13, Letter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eoples's Republic of Korea, 2005/3/2.

James Brooke, "Koizumi's North Korea Trip Is a Flop in Japan," New York Times, May 24(2004).

Law H.R. 4011, the "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Philippe Pons, 'Corée du Nord, enjeu négligé de l'Europe, par Philippe Pons,'Le Monde(2008/10/3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r. Vitit Muntarbhorn (A/HRC/13/47)(February 17, 2010).

Statement by The Deleg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Fofty-Sixth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29 March(2000).

《Abstract》

The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Intervention on the Human Rights and North Korea's Strategy

Kim, Il-Gi

International society is concerned about human rights issues about DPRK. Under the circumstances, it is naturally concluded to intervene in human rights issues against North Korea. Therefore, on this study, it is essential to analyze the recognition and countermeasures of North Korea against the interv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addition, it is also possible to research the effective intervening strategies on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re are many kinds of intervention in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s, such as UN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 and 2009 Human Rights Repor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nducted by individual nations-e.g., US, EU, Japan- as well as organizations for human rights.

For North Korea, it is hard to improve the matter of human rights without making efforts to reform itself voluntarily. Despite a lot interventions in human rights from international society, the failure of North Korea is caused by the absence of informed consent.

Considering this, therefore, to be successful in effective intervening in human rights issues about North Korea, it should be headed to broad the possibility to make real benefits for North Korean authorities by itself. Moreover, it is essential to keep endeavoring for improv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of North Korea.

Key Words: International Community,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umanitarian Intervention, UN Human Rights organization, Human Rights Ideology in North Korea

투고일 : 2011.10.30 / 심사일 : 2011.11.25 / 심사완료일 : 2011.12.25